

# 2021 AIoT 국제전시회

(AIoT Korea Exhibition 2021)

2021. 10. 20(수)~ 10. 22(금) / COEX 3층 Hall C

## 1. 참가업체 정보

회 사 명	국 문		
	영 문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주 소	우편번호 (            )		
전 화			팩 스
홈 페이지			
담 당 자			소속 및 직위
이 메 일			휴 대 폰

## 2. 부스형태 및 참가비 안내

※부가세 별도

부스형태	독립부스	조립부스	프리미엄 부스	마켓관 부스
		일반신청(~9/17)	일반신청(~9/17)	일반신청(~9/17)
회원사	2,000,000 / 1부스	2,500,000 / 1부스	3,100,000 / 1부스	2,000,000 / 1부스
비회원사	2,500,000 / 1부스	3,000,000 / 1부스	3,600,000 / 1부스	

※ 1부스(3m x 3m) 신청기준 / 마켓관 부스(3m x 2m) / 조립부스 1부스 이상, 독립부스·프리미엄부스 2부스 이상 신청가능

※ 회원사는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회원 기준

## 3. 부스 신청 내역

※부가세 별도

구 분	신 청 내 역	금 액
▪ 독립부스	부스	원
▪ 조립부스	부스	원
▪ 프리미엄 패키지부스( __ 타입)	부스	원
▪ 부가세 (10%)		원
▪ 합계		원

## 4. 주요 전시 품목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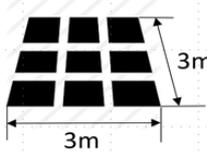
※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메일 또는 Fax(02-881-5444) 송부

※ 입금계좌 : 하나은행 183-910024-19304 예금주 : 케이웨어스㈜

※ 참가비 납입기한 : 1차 / 참가계약서 제출 후 7일 이내, 계약금(50%) 납부  
2차 / 2021년 9월 17일까지 잔금(50%) 납부

신청일	2021년	월	일
성 명	_____		
서 명	_____ (인)		

## ▶▶ 부스 형태 및 참가비 안내

구분	제공내역	비용 (VAT 별도)		부스 형태 1부스 = 3m x 3m (마켓관 = 3m x 2m)	세부내역
		회원사	비회원사		
독립 부스	바닥 면적만 제공 (2부스 이상 신청가능)	2,000,000원/ 1부스	2,500,000원/ 1부스		바닥 면적만 제공 참가업체가 부스 시공 별도 진행(코엑스 지정 업체만 시공 가능)
조립 부스	전시면적 + 조립식 기본부스	2,500,000원/ 1부스	3,000,000원/ 1부스		시스템 부스 벽면, 상 호 간판, 인포메이션1, 접이자 1, Spot Light, 콘센트 1 포함
프리미엄 패키지 부스A	전시면적 + 프리미엄 블록 2부스	6,200,000원/ 2부스	7,200,000원/ 2부스		전시면적 및 공사비 포함 / 사이즈 18㎡ (6mx3m)
프리미엄 패키지 부스 B	전시면적 + 프리미엄 블록 4부스	12,400,000원/ 4부스	14,400,000원/ 4부스		전시면적 및 공사비 포함 / 사이즈 36㎡ (6mx6m)
프리미엄 패키지 부스 C	전시면적 + 프리미엄 블록 6부스	18,600,000원/ 6부스	21,600,000원/ 6부스		전시면적 및 공사비 포함 / 사이즈 54㎡ (9mx6m)
마켓관 부스	전시면적 + 마켓관 부스	2,000,000원/1부스			벽체, 카펫, 전시대, 인포메이션1, 의자1 (3mx2m)

※ 회원사는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회원사 기준(협회 산하 포럼 포함)

※ 프리미엄 패키지 부스의 세부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8부스 이상 신청 시 사무국 별도 문의

※ 부스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조(용어의 정리)**

- 1. "전시자" 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소정의 계약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 2. "전시회" 라 함은 2021 AIoT 국제전시회를 말한다.
- 3. "주최자" 라 함은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및 케이웨어스(주) 를 말한다.

**제2조(참가신청 및 계약)**

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전시회 참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전시면적 배정)**

- 1. 참가 신청 순서 및 규모, 전시 품목에 따라 전시 위치를 배정한다.
- 2. 전시회의 공간 조화와 관람 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를 변경 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해 보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제4조(전시장 관리)**

- 1. 전시자는 참가 예약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설치하고, 상주 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2. 참가예약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락없이 직매 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및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 4.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일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 5. 전시장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 칠 등 원형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 해야 한다.

**제5조(참가비 납입조건)**

- 1.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참가계약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잔금(부대비용포함)은 2021년 9월 17일까지 기한 내에 완납 해야 한다.
- 2. 참가비 잔금을 기한 내에 납입 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기 납입한 참가비에 대해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제6조(해약)**

- 1.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 부스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 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 된 참가비는 반환 하지 아니 한다.
- 2. 전시자가 전시 계약을 취소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전시 개시 60일 이전에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기 납부 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3. 전시 개시 60일 이내에는 전시회 참가 계약을 취소 할 수 없으며, 만일 이 기간내에 전시자가 불가피하게 참가를 포기 할 경우 전시자는 전시회 신청 부스 참가비 중 80% 를 주최자에게 납부해야 하며, 30일 이내 취소 시에는 신청 부스 참가비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부가세 별도)

**제7조(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전시회 개최를 취소 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역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 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 되거나 축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 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제8조(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배정 된 전시면적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설치기간 동안 시간 외 사용이 불가피 할 경우 주최자의 허락을 받은 후 시간의 사용료를 전시자가 주최자에게 지불 하여야 한다. 모든 장치 업체 선정은 코엑스에 등록된 업체에 한한다.

**제9조(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전시기간 내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 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을 즉시 주최자에게 지불 해야 한다.

**제10조(전시장내 경비, 위험부담, 도난)**

- 1. 주최자는 전시회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에 발생하는 배당 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11조(방화 규칙)**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제12조(보충 규제)**

-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 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 해야 한다.

**제13조(분쟁해결)**

본 참가 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 할수 없다.